

#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46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3. 04. 27.
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이 반영하지 못한 조항 일부를 추가로 수정함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안 제11조제2항 중 “원룸형”을 “소형”으로 수정함(안 제11조제2항).

#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2항 중 “원룸형”을 “소형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1조(원룸형 임대주택)</p> <p>① 원룸형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인 이하 가구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하는 기존 원룸형 주택</p> <p>2. 4인 이하 가구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건설 또는 매입하는 50제곱미터 이하의 원룸형 주택</p> <p>② 시장은 원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소형 임대주택)</p> <p>① <u>소형</u>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소형</u>-----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</u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1조(소형 임대주택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소형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##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마목 중 “원룸형 주택”을 “소형 주택”으로, “원룸형 임대주택”을 “소형 임대주택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행복주택”을 “행복주택, 통합공공임대주택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소형주택”을 “국민주택규모 주택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중 “원룸형 임대주택”을 “소형 임대주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원룸형”을 “소형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원룸형 주택”을 “소형 주택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50제곱미터”를 “60제곱미터”로, “원룸형 주택”을 “소형 주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원룸형”을 “소형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의 제목 “(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)”을 “(소형 임대주

택의 주차장 설치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원룸형 임대주택”을 “소형 임대주택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서울공공주택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라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<u>원룸형 주택</u> 중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(이하 “<u>원룸형 임대주택</u>”이라 한다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8조(서울공공주택 공급) ①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서울공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, <u>행복주택</u>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.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 <p>1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----- ----- <u>소형 주택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소형 임대주택</u>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서울공공주택 공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----- ----- ----- <u>행복주택, 통합공공임대주택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/p>

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소형주택

2. ~ 5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제11조(원룸형 임대주택) ① 원룸형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인 이하 가구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하는 기존 원룸형 주택

2. 4인 이하 가구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건설 또는 매입하는 50제곱미터 이하의 원룸형 주택

② 시장은 원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11조의2(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) 원룸형 임대주택에는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가 0.5대(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.4대) 이상이

-----  
-----  
-- 국민주택규모 주택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소형 임대주택) ① 소형 -----  
-----.

1. -----  
-----  
-- 소형 주택

2. -----  
-----  
----- 60제곱미터 -----  
소형 주택

② ----- 소형 -----  
-----  
-----.

제11조의2(소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) 소형 임대주택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

-----  
--.